

조사 안내문

<앞장>

산후조리원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산후조리원 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원 만들기에 연일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이 발생하여 산모와 신생아가 결핵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걱정과 염려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는 물론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결핵예방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후조리원은 숙식을 포함하여 제한된 공간에 밀집하여 생활하고, 특히 면역력이 낮은 신생아는 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결핵성 수막염, 속립성 결핵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결핵예방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첫째,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결핵관리 예방교육을 받게 됩니다. 둘째, 관할 보건소에서는 동의자에 한해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균의 잠복결핵감염 상태를 확인합니다. 셋째, 잠복결핵감염으로 확인되는 경우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원을 만들기 위해 원장님과 산후조리원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장정순(전화 : 2241-6032)

성 북 구 보 건 소 장

□ 협조 요청 사항

<조사 준비 시>

1. 직원들에게 조사 안내 및 참여 독려
2. 직원수(비정규직 포함) 및 희망조사일정 보건소 회신, 조율

<조사 시행 시>

3. 직원 개인별로 산후조리원 종사자 개인안내용 ‘조사 안내 및 동의서’ 배부
4. 결핵예방교육 협조, 직원 참여 독려
5. 잠복결핵감염 검사·치료 협조, 직원 참여 독려

□ 알아두세요 ㄸ

1.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에 대한 규제·불이익 금지)

본 조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 전염력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종사 일시제한이나 업무전환배치 등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제2항: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본 조사의 개인별 검사·치료결과는 검사·치료를 받은 당사자(개인)에게 개별 통보하며, 기관(산후조리원)에서는 이의 공개나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별 조사 결과는 추후의 잠복결핵감염 검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집·관리하며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잠복결핵감염 검사 시 상당수에서 양성 확인 예상)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상당수가 잠복결핵감염 상태로 추정되고 있어, 본 조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시 많은 수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부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이 전파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행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잠복결핵감염 상태는 면역력이 떨어질 때에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본 조사(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는 결핵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4.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사, 무료 치료)

본 조사를 통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그 치료는 보건소를 통하여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 결핵전문치료가 필요하여 협력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 항목은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적극적 참여 당부)

본 조사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직원 본인은 물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귀 산후조리원의 협조와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